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Manual





○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주) 대표이사 나형균입니다.

국내 최초의 전선회사로 출발한 대한전선은, 60여 년이 넘는 도전의 역사 속에서 전력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의 사모펀드 경영 체제는,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경영환경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전선은 올해 5월 호반그룹으로 편입되어 보다 폭 넓은 사업확장의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그룹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통한 퀀텀 점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대한전선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도입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선언이 대한전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한전선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임직원 상호간은 물론, 고객과 협력업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관계를 구축해 준법경영을 구체화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ESG경영(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함으로써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 8. 9.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형 균



○ 자율준수편람 발간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율준수관리자 이기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의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와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업무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놓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서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미 및 구성요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2. 우리 회사의 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과 관련한 유의사항 그리고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본 자율준수편람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어 법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 회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9.

대한전선㈜ 자율준수관리자 이 기 원



○ 편람 개정 이력

일자	이력	개정 내용	비고
2021. 8. 9.	제정	최초 작성	
2021. 8. 23.	개정	CP운영 규정 개정	용어정리 등
2021. 9. 13.	개정	CP운영 규정 개정	자율준수편람 변경 시기 개정



목 차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3. CP 8대 구성요소
- 4. 대한전선㈜ CP소개

Ⅱ. 공정거래법

- 1. 부당지원행위
- 2. 특수관계인 이익 제공
-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4.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 5.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Ⅲ. 하도급법

- 1. 하도급거래란?
- 2.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 3. 하도급위반사건 처리절차

IV. 부록

- 1. 체크리스트
- 2. 대한전선㈜ CP운영규정
- 3.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법령



법령 약어 등 정리

- 'CP'라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말함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함'
-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함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함
-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임명
- '자율준수운영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자시 및 감독을 받아 CP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
-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말함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 3. CP 8대 구성요소
- 4. 대한전선㈜ CP 소개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 의의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함

2) 도입 계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적발 시 공정위는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규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수단으로는 행정력 낭비, 기업 이미지 훼손과 과징금등의 경제력 손해 발생 여지가 있어 기업 스스로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

3) CP의 성격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4) 기업의 CP 도입 필요성

①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방지

위반행위 발생 전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예방함으로써 공정위 조사 및 과징금, 소송비용, 손해배상 등의 경제적 부담을 예방하고 최소화

② 기업 신뢰도 제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CP 운영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Global Business 지향의 기업에게 CP편람 도입 및 CP 준수는 신뢰도 제고로 인한 기업가치 향상의 효과적 도구로 작동

- ③ 절약한 자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비용 절감
- ④ 개별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법률적 책임 경감
- ⑤ 사회적 가치 및 대내외 신뢰도 제고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



5) 공정위의 CP 유인 제공

- ①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공표 조치의 면제·경감
- ②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1년 ~2년), 등급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CP 8대 구성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2)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①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그룹웨어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함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운영팀을 설치

- ①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해당 사실을 그룹웨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함
- ②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통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해야 함
- ③ 자율준수운영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주관해야 함

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 및 활용

- ①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운영팀이 작성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함
- ②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그룹웨어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함
- ③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 ④ 자율준수운영팀은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 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자율준수편람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임직원에게 수정된 편람을 공표해야 함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① 전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② 특히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③ 공정거래정책이 중요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은 반드시분기당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되어야 함
- ④ 기타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 신규 (신입 또는 경력) 임직원 채용 시에는 수시로 실시 되어야 함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①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 ② 감시 및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 (연 2회)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함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인사 제재

가. 목적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인센티브

가. 목적

CP는 회사 소속 임직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제도 준수를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CP준수 성과, 참여도, 공정거래 법규 위반의 사전 예방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포상 등)를 제공하여 공정거래 제도 및 문화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나. 선정 유형

자율준수관리자는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회 우수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등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음

- 가) 내부 신고를 활용하여 기업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현 저히 기여한 임직원 또는 부서
- 나) 기타 CP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우수하다고 선정한 임직원 또는 부서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함



4. 대한전선㈜ CP 소개

1) CP 조직 소개

① 조직도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운영팀	
	팀장	김기평
이기원	팀원	김경훈
이기권		박정곤
		권보현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 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나.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 다.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라.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마.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 바.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사.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아.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
- 자.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 차.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CP 운영

- 가. 회사는 CP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CP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
- 나.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운영하고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
- 다. 자율준수운영팀은 CP규정에 의거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보조 또는 수행
- 라. 회사의 각 부서는 CP 규정에 의거 부서담당자를 지정하고, 부서담당자는 CP담당자 와 협업하여 올바른 CP운영을 실천

2) 대한전선㈜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사업의 종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기타 법령
제조업		민법, 상법 등
판매업		건명, 영립 중
투자업	1.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등 2. 하도급법 및 시행령 등	자본시장법 등
토목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업	3. 약관법 및 시행령 등 4.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기공사업	5. 대리점법 및 시행령 등 6. 제조물책임법 및 시행령 등	전기공사업법 등
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소방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Ⅱ. 공정거래법

- 1. 부당지원행위
- 2. 특수관계인 이익 제공
-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4.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 5.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지원행위

1) 개요

①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가. 지원 주체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

나. 지원 객체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함 (개인도 될 수 있음)

	정의
특수관계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및 총수와 관련된 친인척,
	계열회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용인 및 임원을 포함

다. 지원행위의 존재

부당하게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

- ② 지원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
 - 가. 객체가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객체가 속하는 거래 분야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객체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라. 객체가 속하는 거래 분야에서 지원 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 진입 이 저해되는 경우
 - 마.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객체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루어져, 해당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유형

① 자금지원행위

가. 판단기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u>적용된</u> 금리(실제적용금리)가</u>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 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 또는 특수관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

나. 구체적 유형

- 가) 상품 또는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나)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한 경우
- 다) 지원객체 소유 건물 및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라)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② 자산지원행위

가. 판단기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가격(실제거래가격)과 당해 자산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산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

나. 구체적 유형

가)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 (기업어음고가매입)



- 나)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 다)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 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이나 친족독립경영회사가 인수한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마)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바)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③ 상품 및 용역지원행위

- 가. 거래 대가 차이에 의한 지원
 - 가) 판단기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

- 나) 구체적 유형
 - A.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 지연
 - B. 지원객체가 생산 및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나.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 가) 판단기준

현저한 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될 수 없고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등을 감안한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이 있어야 됨



- A.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지 여부
- B.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지 여부

④ 인력지원행위

가. 판단기준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제지급급여가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상급여보다 적은 경우

나. 구체적 유형

- 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를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나)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⑤ 통행세

가. 판단기준

급부와 반대급부 간 비례성 상실을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나. 구체적 유형

- 가)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및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다) 어느 정도 역할은 있으나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 ⑥ 부동산 임대차를 통한 지원행위
 - 가. 판단기준

부동산을 지원객체에게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 정상임대료 =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 X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 나. 구체적 유형
 - 가) 지원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 나)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2.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1) 적용대상

- ① 이익제공 주체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이익제공 객체
 - 가. 특수관계인 : 동일인 및 그 친족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 관리자로부터 제외된 자는 제외함)에 한정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기준

시행일	내 용
성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현재	30% (비상장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1.12.30.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계열회사
	2.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2) 금지행위 유형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헐값 제공 또는 고가매입)

가. 정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상품, 용역, 인력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나. 판단기준

상당히 유리한 조건 판단 시 정상가격의 산정, 정상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 그 차이의 상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함

다. 적용제외

정상가격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거래금액이 50억원 (상품, 용역의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② 사업기회 제공

가. 정의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나. 규제 대상 행위

- 가)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신이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자신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에 사업을 넘기는 행위
- 나) 자신의 사업과 밀접하거나 유사한 사업관련성이 있는 회사를 신설한 후 신설회사의 상당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다. 적용제외

- 가)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나)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다)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 ③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정의

→ 회사가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나. 적용제외

→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④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물량 몰아주기)

가. 정의

→ 성립요건사업 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 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당해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및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당해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함

나. 판단기준

	비용 절감 효과가 지원 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상당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규모 판단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다. 적용제외 (위법성 조각 사유)

구분	내용		
	거래당사자 간 상품, 용역의 연간 거래 총액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함)이		
별표1의 3 제4호 단서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공정거래법 시행령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별표1의 4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됨		

라. 업무 상 유의사항

가)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A. 정의 :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

B. 기준 : 긴급성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나 보안성 사유 를 판단할 때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C. 예외

- 1)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 사회적 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단순한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2) 단순히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A. 정의 :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거래를 말함

B. 유형

- 1)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축 운영,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 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안기술 및 정보가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보안성을 인정할 수 있음
- 2) 거래 과정에서 영업, 판매, 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상호간의 핵심적인 경영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음

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A. 정의 : 비용절감 또는 판매량 증가나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

B. 거래 유형

- 1) 상품의 규격, 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이 부품이나 소재,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품질 혹은 경쟁력과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일감을 맡기는 것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
- 2) 회사의 기획, 생산, 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단일 상품



- 거래가 아닌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 3) 회사가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사업부가 분사되어 계열사가 된 것이므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 4)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으로 협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종합적인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5) 거래 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대규모 또는 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변경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거래에 효율성 증대효과가 인정될 수 있음

3) 귀속 이익의 부당성 판단 요건

경제력집중	시장집중, 산업집중, 소유집중, 일반집중	
귀속이익의 부당성	총수일가 및 친인척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의 형성, 유지, 강화가 우려되는 경우	
입증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사례 및 판례 (귀속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계열회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공정위 2017. 01. 10. 의결 제2017-009호)

그러나, 공정위는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해석 원칙에 비추어볼 때 위 사업자들의 거래 상 귀속이익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위 처분과 관련하여 입증하지 못하여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계류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 36153 판결)



4) 위반 시 제재

① 대상: 이익제공 주체 및 객체

② 제재 유형

유형	내용		
시정조치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중지 및 계약조항 삭제, 사실공표 등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5/100 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익 제공객체는 적용X)		



3.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자 및 방법

- ① 공시 대상자
 -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함
 - 나.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
 - 다. 해외 현지법인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서 제외

② 공시 방법

- 가.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 단, 상장법인이 설치한 위원회 (사외이사 3인이상 포함,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2/3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아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가) 거래의 목적 및 대상
 - 나) 상대방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 포함)
 - 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 유형의 총 거래 잔액

다. 공시 시기

- 가) 상장 법인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함
- 나) 거래 목적의 변경, 거래 대상의 변경, 거래 상대방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변경 시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 거래 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증감할 경우 등
- 라. 기타 유형 별 공시 방법
 - 가) 거래당사자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 이사회 의결 공시
 - 나)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만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가 발생
 - 다) 당사가 특수관계인의 비영리법인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가 발생



2) 대규모 내부거래

① 정의

'대규모 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말함

② 유형

-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자금'이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현금 기타 자금을 말함
-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유가증권'이란 주식 또는 회사채를 말하며, 그 행위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말함
-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rightarrow '자산'이란 위 가.,나.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투자, 유형, 무형 등 고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가 포함됨
- 라.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를 말함
 - → '상품 또는 용역 거래'란 회사의 상품 거래, 용역 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계상되는 거래를 말함



③ 판단 방법

- 가. 금액: [자본총계 or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금액
- 나. 대규모 내부거래 판단 기준
 - 가)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 거래 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 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 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다) 대규도 내부 거래 금액 산정의 방법

유형	산정 방법
자금	
유가증권	실제 거래하는 금액
자산거래 (부동산 등)	
부동산 임대차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을 연이율 1.2%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담보제공	담보 한도액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
상품 및 용역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

다. 거래상대방 판단 기준

가) 특수관계인

- A.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하, '동일인')
- B. 동일인 관련자
- C.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으로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업무 TIP 1. 특수관계인 위한 거래 비계열사 계열사 B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공시 의무가 발생함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열사A



계열사 B

- 계열사 A가 거래상대방인 계열사 B와 자금의 차입 또는 대여, 상품 또는 용역 거래 등을 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공시 의무가 발생함
-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축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도 해당
 -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 법인 또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특례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일괄 공시	수 있음
	→ 의결 결과는 상장법인은 1일 이내에 공시
	상품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변경 공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거래금액을
	공시함
ㅂ╸ㅈ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분기 중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공시	중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함
	계약 건 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다만,
계약 별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 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 금액
공시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함

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공시규정 제9조)

가. 대상 :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

나. 요건 및 특례

상대방	구분	특례
계열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	분기별 이사회 의결 가능
금융회사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를 한 때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



다.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인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		
•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 계열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매매하는 경우	경우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	ㆍ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금융사가 인수/매입하는 경우	중도 전환하는 경우		
ㆍ 채권 (회사채, 기업 어음 등)을	·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하는 경우			
· 기업어음 중계·인수·할인 등의			
매매행위			
· 수익증권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 는 경우			
· 초단기 수익증권 (MMA 등)을 계열			
증권 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계열 생보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콜 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			
·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채권 을 매입하는 경우			

업무 TIP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1.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만기 상환하는 경우 / 할부금융 또는 카드결제)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 나.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공시 사항 누락 여부	과태료 (단위 : 만원)
	공시 X	-	-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기한 내 공시 공시 O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이후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 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누락 또는 허위 공시	2,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 하지 않은 경우	500 (공시기한은 넘긴 날의 다음 날 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 가산하되, 5,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누락 또는 허위 공시	5,000	
	공시 X			7,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을 지 은 공시 O		누락 또는 허위 공시 하지 않은 경우	5,000
경우			누락 또는 허위공시	7,000

→ 공정위는 위와 같이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① 납입자본금 변동 현황을 확인함
- ② 계열사 편입 일자를 확인함 (공정위로부터 계열 편입 통지일 또는 승인일)
- ③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자동연장조항 관련하여 재계약여부를 확인함
- ④ 언제부터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했는지 그리고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함 (상장회사, 코스닥등록법인 여부 확인)
- ⑤ 주식의 장내 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⑥ 약관에 의한 금융 거래 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한도 공시를 하지 않고 직접 행위 시점에 공시하였을 경우에 공시 양식에 이사회 의결 일자를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 ⑦ 상품 및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주거래에 수반된 종된 거래로 보아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⑧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전환행위는 주된 거래에 수반된 종된 거래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⑨ 조기에 상환하는 행위는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⑩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시에 증자하는 회사와 참여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공시대상요건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공시 여부를 확인함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일 기준이 아님)
- ① 공시대상 거래 여부 판단 시 거래상대방, 거래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행위로 보아 공시 여부를 판단함
- ① 소급 의결, 사후 의결의 경우 자료확보 후 협의하여 결정함



4.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1) 입찰 담합이란?

- ① 입찰 담합은 2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 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의 유형임
- ② 입찰 담합은 부당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폐해가 심각함
- ③ 공정거래법 외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고, 입찰 발주 기관에서도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음

업무 TIP

입찰시 주의사항

- 1. 경쟁사업자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2. 경쟁사업자와의 회합에서 입찰 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큼.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회합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입찰 담합의 유형

- ① 입찰가격담합
 - 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계약 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임
 - 나. 가격은 본래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결정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입찰가격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함
- 라. 타당한 가격 수준을 위한 것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제조 위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든지, 부당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당화 되지 않음
- ②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수주 당사자 선정에 관한 행위)
 - 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 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 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됨
 - 나. 입찰 관련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예정자의 선정 방법의 결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입찰 시 사전에 수주 받아야 할 자를 특정해 그 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은 문제되지 않음
 - →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인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예정자 또는 수주 예정자의 선정 방법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함
 - 다.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든지, 수주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라든가, 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이나 기존의 수주와의 계속성이나 관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음
 - 라. 만일 제3자가 수주예정자에 대해 추천이나 권장이 있었을 경우에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그 추천이나 권장을 따를 것을 결정하면 이 역시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해당함

업무 TIP

1. 금지되는 행위

- 1)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2) 당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와 공동으로 당사 또는 다른 사업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하여 응찰하는 행위
- 3) 공동으로 지명 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 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
- 4)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공사발주 시 낙찰의 협조, 금품 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 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
- 5)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 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 6) 특정 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
- 7)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
- 8)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
- 9) 수주 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 사업자 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 10) 낙찰자 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2. 금지되지 않는 행위

- 1) 당사가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와 협의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
- 2) 당사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설계 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
- 3) 당사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관련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 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 ③ 경쟁 입찰시 수의계약을 유도

가. 개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됨

업무 TIP

1. 금지되는 행위

- 1)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 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2)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 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
- 3)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 업자 또는 불량 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2. 금지되지 않는 행위

- 1) 급격한 가격상승 등으로 입찰공고 당시 설계금액으로는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 2) 1차 입찰에 참여하고 같은 입찰 조건 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④ 수주물량 등의 결정

가. 개요

- 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 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 적으로 위반이 됨
- 나) 입찰제도 중에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서 가격 이외에 수량 등 기타의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의 내용에 따라 낙찰자 및 낙찰 가격에 추가하여 낙찰 수량 등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있음. 이러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수주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됨
- 다) 여기에서의 결정은 명시적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주 수량, 비율 등에 관해 암묵적인 이해 또는 공통의 의사가 형성되는 것으로 충분함

업무 TIP

1. 금지되는 행위

- 1)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 참가자 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경우
- 2)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 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
- 3)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금지되지 않는 행위

- 1)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 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것은 가능
- 2)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 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



⑤ 경영간섭

가. 개요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 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경쟁 제한적인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이 됨

업무 TIP

1. 금지되는 행위

- 1) 당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 자재 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경우
- 2) 당사가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 분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도록 하는 경우

2. 금지되지 않는 행위

- 1) 당사가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및 안전 시공을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경쟁을 촉진·확산시키려는 경우
- 2) 당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발주자에 대한 기술 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

3) 경쟁사 모임 관련 행동지침

- ① 경쟁사와의 모임은 그 형태 (공식 또는 비공식)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 사실로도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여야 함
- ② 업계 공식 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함
- ③ 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담당자를 통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함

④ 행동지침

- 가. 판매, 공급 관련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음
- 나. 담합은 합의사항의 실행 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



-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함. 법 위반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운영팀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함
- 다.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림
- 라. 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 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함
- 마. 모든 업계 모임 참석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동종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시 모임 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사. 모임에 참석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부서담당자를 통하여 자율준수 관리자에 직접 보고하여야 함
- 아. 부서담당자는 매월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임 참여 내역을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4)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함
 -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됨
 -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됨
- ②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함
- ③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④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시 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함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함

5)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 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 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②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함
- ③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함
- ④ 문서 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함
- ⑤ 회사의 중요 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⑥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
- ⑦ 미래에 대비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함
- ⑧ 문제가 될만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
- ⑨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① 내부 또는 외부 문서 작성시 항상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정위 담당자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또한 가능한 가장 최악의 내용으로 해석될 것을 가정해야 함
- ① 당사의 가격이 자사의 사업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다른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②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업무 TIP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1.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 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2. 회사가 부당한 공동문서 작성 시 표현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할 문구
 - 1) 동업사 '협력' 강화
 - 2) '업계공동대응 (예정)', '업계 차원의 검토'
 - 3) 타사와 정보 '공유'
 - 4) 'A사는 200x.10.1부터 추진 예정', 'B사 5% 결정 예정'
 - 5) '경쟁 자제', '경쟁 지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6) '시장 안정화' 협조, '시장 정화'방안, '시장질서'유지, 개선 필요
 - 7) 업계간 '공조', '협조' 체제 '당사의 지역', '타사 지역'
 - 8) '경쟁사의 조건은 당사와 동일 (xxxx 시행 예정)', 'H사 28% (당사 조정 시 인하 예정),' '월 x회 정기적인 교류활동'
 - 9) '상위사와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폐지하기로' 합의



5.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① 가격차별행위

가. 성립요건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구 분	내 용		
가 격	할인율, 리베이트, 에누리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모두 포함		
상대방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		
현저성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나. 판단기준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거나 강화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경쟁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제한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화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 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다. 유형

-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 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 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 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가격 측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 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다)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행위
- 라)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 간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행위

가. 성립요건 : 가격차별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 결제조건, 판매장려금, 판매장 려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차별행위가 대상

구분	내용		
차별의 현저성	거래와 관련하여 차별의 정도, 정상적인 상관행, 거래상대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정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대상	특정사업자만을 대상		

나. 판단기준

위법성	1차 시장 또는 2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ПНО	위주로 판단

다. 유형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 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의 상품, 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가. 성립요건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 간에 가격 및 비가격조건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며, 차별 정도가 현저해야 하고,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함

구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지원행위
요건	현저성을 요함	상당성을 요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조건이 보다 엄격함

나. 판단기준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시	ŀ에	대해
경쟁제한성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	의 경 [;]	쟁사업자(에 대해	현지	터하게
경재력집중	불리하게 취급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 하였는지 여부							

다. 유형

- 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상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상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나)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다)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라)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④ 집단적 차별행위

가. 성립요건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나. 판단기준

위법성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동일	
-----	------------------------	--

다. 유형

- 가)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나)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하는 경우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① 계속적 부당염매행위

가. 성립요건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구 분	내 용		
대가	대가가 공급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아야 함		
공급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어야 함		

나. 유형

- 가)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이 단기간 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나)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다. 법 위반이 아닌 경우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
	될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정당한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이유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소명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사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일시적 부당염매행위

가. 성립요건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나. 판단기준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위법성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HEO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진입장벽 유무



③ 부당고가매입

가. 성립요건 :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어야 함

나. 판단기준

위법성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유형

- 가) 합리적 이유 없이 상품의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부당한 거래강제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① 끼워팔기행위

가. 성립요건 :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강제행위가 존재해야 함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 지 여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자 인식, 태도
	상품 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봄



나. 판단기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일 것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력이 있을 것
위법성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할 것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할 것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것

다. 유형

- 다)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상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라)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 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마)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행위

가. 성립요건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필요

나. 판단기준

огн м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위법성	임직원에 대한 구입 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다. 유형

- 가) 목표량 미달 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다)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
- 라)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4)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① 구입강제행위

가. 성립요건 :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존재해야함

나. 판단기준

		거래상지위 여부
	위법성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거래내용이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다. 유형

- 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 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마) 합리적 이유 없이 도,소매업체 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체 또는 대리점이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② 이익제공강요행위

가. 성립요건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나. 판단기준

	거래상지위 여부
위법성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거래내용이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다. 유형

- 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나)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및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행위

가. 성립요건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나. 판단기준

		거래상지위 여부
	위법성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거래내용이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다. 유형

-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나)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수수료 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다) 대리점이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상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 시 공제하는 행위
- 라)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마)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행위

가. 성립요건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나. 판단기준

	거래상지위 여부
위법성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거래내용이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다. 유형

-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나)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다)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라)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일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바)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사)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 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아)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자) 사업자가 자기위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차)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카)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경영간섭행위

가. 성립요건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함

나. 판단기준

		거래상지위 여부
	위법성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거래내용이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다. 유형

- 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상품 광고 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5) 부당하게 상대방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① 배타조건부거래행위

가. 유형

- 가)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구매자가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 다)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나. 판단기준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위법성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пно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배타조건부거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약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행위

가. 유형

- 가) 판매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수직적 가격제한의 유형
- 나) 영업구역 지정, 영업장 지정, 영업고객 지정, 영업구역과 고객의 동시제한, 1차 영업구역 지정 등의 유형

나. 판단기준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경쟁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제한성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Ⅲ. 하도급법

- 1. 하도급거래란?
- 2. 하도급법상 규제 내용
- 3. 하도급법위반사건 처리절차



1. 하도급거래란?

1) 하도급거래의 정의 (제2조)

- ① 도급 : 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 형태 (민법 제664조)
- ② 하도급: 재위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 받은 수급인이 다시 도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
 - → 하도급법은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에도 적용

2) 하도급 거래 행위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한 행위
- ②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발주처)로부터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 (하수급인)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①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가. 수급사업자

- 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 매출 기준) 참조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미 적용

나. 원사업자

- 가) 중소기업법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 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수급 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
 - A.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 적용 제외 대상



→ 제조, 수리위탁 : 연 매출 30억 미만 →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45억 미만

→ 용역위탁 : 연 매출 10억 미만

다) 계열회사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특정 사업자의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에 해당

-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A.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연매출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해당
 - → 단,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규정만 적용
- 마) 대규모 중견기업 중 연매출 2조원 이상인 회사
 - A.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 2조 원을 초과하는 소위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 (연간매출액 제조업 3,000억원, 건설업 2,000억원)에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에 해당
 - → 단,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하도급법 제21조), 조사대상 거래제한 (하도급법 제23조 제2항), 분쟁의 조정 (하도급법 제24조의 4 제1항), 공탁 (하도급법 제25조의 2), 과실상계 (하도급법 제33조) 규정 적용

4) 하도급법 시효 (조사 및 처분 적용 기간)

- ① 기본 시효 :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조사 가능

 → 단,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행위의 경우, 7년의 시효 적용
- ② 신고된 경우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또는 7년 이내에 신고되면 위 기간을 경과 하더라도 조사 개시 가능
- ③ '거래가 끝나는 날' :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일, 역무 공급 완료일, 공사 완공일, 계약 해지일 또는 중지일



5)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① 단속 규정 : 하도급법은 단속규정으로 각 위반행위별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규정
- ② 사법상 효력 : 하도급법에 반하는 사인들 간의 합의나 약정 가능
 - → 단,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을 구성할 경우, 민사상 무효로 볼 수 있음
 - → 단,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 시, 손해배상책임 적용 가능
- ③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 불공정 계약에 해당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해당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1.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2.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4.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6.「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1) 하도급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

단계	원사업자의 고려,	관련 법령 및 고시
L'II	준수사항	CC 80 X 20
전체	-	하도급법 및 시행령
_ "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수급사업자가 대기업,	중소기합기단합 세2도 세1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부인지 확인 -> 하도급법 적용여부	0 C/1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판단 목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제6항 (제조위탁), 제8항
계약협상	거래내용의 하도급법	(수리위탁), 제9항 (건설위탁), 제11항 (용역위탁)
당사자	적용대상 여부 확인	제조위탁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선정	(단순 구매인지 제조위탁인지 등 확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 범위의 고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협력업체 등록, 관리 및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	대,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동 기준 별표6.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계약체결 전반	대,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계약체결 실천사항 (별표 5)
" 1" " =	하도급계약서 작성, 교부,	하도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대,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보존 의무	기준 (별표 7)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별표 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결정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위 기준)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시행령 제6조의 2 -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법 제4조, 시행령 제7조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심사지침
	부당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 2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하도급 대금의 결정,	물품 등 구매강제,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금지 및 조기결제청구금지	하도급법 제12조
감액, 조정 등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증액 및 감액)	하도급법 제16조, 시행령 제7조의 2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하도급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의 2 및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제9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목적물 검사 및 수령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대금지급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6조 -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15.5%)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할인율 고시 (7.5%)



		- 어음 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수수료율 고시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13조 - 상동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 적용)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시행령 제9조의4
	건설하도급대금보증의무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제7조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15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기술자료 제공강요 및 유용금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제12조의3, 시행령 제7조의3 - 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 행위 심사 지침
기술 탈취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및 기타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의무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공정거래협약체결 권장	하도급법 제3조의3 - 대,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발주자의 의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의무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6조
수급사업자 의 의무	위법행위 협조거부 의무 및 증거서류 제출의무	하도급법 제21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2) 계약 체결 단계 별 금지 및 의무사항

- 가.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
 - 가) 취지 및 교부 시기
 - A. 취지 : 하도급법이 서면교부의무를 부여한 것은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하여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B. 교부 시기 : 사전 교부가 원칙
 - 제조 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 위탁 :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 위탁 :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 위탁 : 용역 수행 행위를 하기 전
 - 예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교부원칙 예외 허용 (입증책임 : 원사업자)

업무TIP

1. 서면의 정의

- 통상 계약서를 의미 (사전에 교부 되어야 함)
-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도 서면에 해당

2. 필수 서면 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 (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 (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나) 추가공사에서의 서면교부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서면교부
 - A. 추가 위탁의 경우 :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에 해당
 - B. 설계변경 등의 경우
 - 계약금액의 변경 :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이유로 원도급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계약내용의 변경 :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해야 함
- 다)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 : 원사업자가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라) 서류보존의무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

업무TIP

보존해야하는 서류 목록

- 1. 하도급대금 등 거래조건 등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 물품 수령 증명서, 입찰 명세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건설 위탁에 한함), 설계 설명서 (건설 위탁에 한함)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2.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 포함), 선급금 (어음할인료, 관세 환급액, 지연이자 등) 등 지급일과 지급 금액, 원재료 제공 내역 및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 포함), 하도급대금 조정시 조정 금액 및 사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 금액 및 사유 포함) 등이 기재된 서류
 - 마) 위반에 대한 제재 :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권고 및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
 - A. 대한전선 그룹웨어 법무자료실에 등록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 B. 표준계약서 사용 시, 위반 시 공정위로부터 인센티브 부여됨
 - C. 표준계약서에 추가하여 별도 특약 사항 합의 가능

나. 부당특약금지

가) 취지 : 정상적 거래관행이 작동하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요구라 하더라도 거래상 열위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거래관계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이를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외견상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이므로 적법한 권리 및 의무 관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정한 거래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음



업무 TIP

계약과 특약의 개념 비교

1. 계약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계약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특별한 조건을 붙인 합의 또는 약속을 특약이라 함

2. 특약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을 말함.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계약을 근거로 특별한 조건을 붙인 모든 조항

3. 부당 특약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함

- 나) 위반시 제재
 - A.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 B. 위 A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업무 TIP

수급사업자와 특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

- 다) 하도급법 상 부당 특약 간주 사항
 - A.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1. 하도급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 현장설명서, 입찰 및 견적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유의서, 입찰제안요청서 등의 기타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3.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사용료, 야적장임대료 (보관 및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서면에는 없고 현장설명서에만 있는 경우,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약정하는 경우



B.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위법성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C.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견적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D.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1.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2. 원 사업자 (발주자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3. 원사업자의 지시 (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 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에 따른 재 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4.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 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E.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불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때'란 정상적인 거래 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무겁게 지워진 경우를 의미함



- F.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1. 간접비 :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
 - 2. 제외 사항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 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 G. 하도급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2.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등을 제한 하는 약정
- H.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 (다만, 원사업자가 제반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
 - 2.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위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 I.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2.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 J.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1.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3.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K.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1.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2.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3.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5. 계약 해제, 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6.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 지연, 수량 부족, 성능 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L.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당 특약의 유형
 - 1.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 2.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 3.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 및 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 4.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 5.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 6.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사법상 무효가 되는 특약

-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3) 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에 관한 금지 및 의무사항

-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가) 취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등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방지

나) 요건

- A. 부당한 방법 여부
 - 가격결정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여부
- B. 통상 지급되는 대가
 -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가격으로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 또는 시가' 를 의미함



C.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

- '통상 지급되는 대가' 와의 괴리 정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원재료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의 정도, 단가 결정
 - 방법의 정당,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D.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던 하도급 관계를 중단하거나 다른 거래에서의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하였는지 또는 실제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일반적으로 낮은 대가로 하도급 받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함
- 다) 입증 책임 : 공정위는 위 요건 A~D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함

업무 TIP

공정위의 하도급법 관련 조사 대응 방법

- 1.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그것이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임을 강변하더라도 공정위에서 잘 인정하지 않음
- 2. 협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함
- 3. 자료의 종류 : 내부보고서, 이메일 교신 자료 등을 잘 구비하여 둘 필요가 있음
 - 라) 부당대금결정 간주 조항
 - A. 목적과 취지 : 간주 조항을 통해 법 위반 입증의 어려움을 덜할 수 있음
 - B. 간주 조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거래 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나 노임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비용이 감소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위법성 조각
 -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시장상황, 거래규모, 규격, 품질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위법성 성립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별로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 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도 위법성 성립



- 2.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이를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대금 지침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할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에 해당
-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 의존도, 운송 거리 및 납기,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 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위법성 판단
- 4. 기망 하도급대금 결정
 -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판단
-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 동의나 승낙이 없는데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수의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

-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의미하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와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목은 제외
- 정당한 사유 : 공사현장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7.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새로 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나 과정,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객관적, 합리적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

마) 위반시 제재

- A.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
- B. 위 A를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C. 징벌적 손해배상 :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

나. 부당 감액의 금지

가) 취지 :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려는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는 열악한 정보나 거래 단절의 위험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나) 판단 기준

A. 부당성 : 하도급계약의 내용, 계약 이행의 특성, 감액의 경위,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의 방법과 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업무 TIP

판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원자재 가격 변동, 생산성 향상 등의 사유로 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발주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더라도, 하도급 발주일과 목적물 제작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만 있었을 뿐 아직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하지 않음



B. 자발적 동의 :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감액 또는 실질적 협의에 의한 감액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판단

업무 TIP

판례 :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 감액의 경위, 대금 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다) 부당 감액 간주 조항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이나 적정한 사용 대가를 넘어서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졌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과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라) 사법상 효력과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이나 정산약정 등합의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다.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 및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및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

라.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금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마. 물품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한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할 수 없음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통지의무

가) 의의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함

나) 요건

- A.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B.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다) 기한

- A.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 B. 증액 또는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함



업무 TIP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증액된 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라) 구체적인 조정방법

- A. 변경에 따른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 : 그에 따르면 됨
- B. 변경에 따른 내용과 비율이 불명확한 경우 : 평균 비율에 따라 지급
- C. 구체적 방법
 - 1. 하도급계약이 조정 기준 시점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조정 기준 시점 이후의 잔여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면 됨
 - 2. 조정 기준 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아도 됨 → 이전에 선 시공 사실 입증되면 조정해주어야 함
 - 3. 일부 공정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더라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
 - 4. 기존 공정에 대한 추가 시공 부분은 당초 하도급단가를 유사 단가로 보고 도급 단가의 등락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비율)을 적용해 조정하면 됨
 - 5. 신규 공정 부분은 발주처로부터 적용 받은 단가를 기초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
 - 6.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더라도, 기존 하도급계약에 따른 위탁 업무가 아니라 추가 업무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마) 감액의 정당성

-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
- B.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바) 사법상 효력 및 위반시 제재

A.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원칙



업무 TIP

건설공사 도급계약 감액의 경우 확인

그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에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 A.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및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또한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짐
- 사.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계약금액)의 조정 의무
 - 가) 의의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가능

나) 기준

- A.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B.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C.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D.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업무 TIP**

- 1.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2.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2)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검사 및 수령에 관한 금지 및 의무사항

- 가.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결과 통지 의무
 - 가) 검사 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합격한 것으로 봄

업무 TIP

- 1. 제조 위탁의 경우 : 기성 부분을 통지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
- 2. 건설 위탁의 경우 :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3. 역무 공급위탁의 경우 : 검사 의무가 없음
 - 나) 검사 의무 위반의 효과 : 위반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대금 채무가 발생
 - 다)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및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나.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 가) 의의 :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의 위탁을 한 후임의로 용역 위탁을 취소 (해제·해지를 포함)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 (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함
 - 나) 임의의 위탁 취소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 A. 위탁 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 취소가 위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B.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 C.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 D.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의 용역의 착수를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 (이하, '납기'라 함)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시 제재 :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업무 TIP

1. 실질적인 협의

위탁 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 및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만약 원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

2. 부당성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하고,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 취소의 경위, 위탁 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 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 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원사업자가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5) 대금 지급에 관한 금지 및 의무사항

- 가. 선급금 지급 의무 (법 제6조)
 - 가) 의의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나) 예외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 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다) 방법

- A.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연 15.5%)를 지급하여야 함
- B.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연7.5%) 또는 수수료 (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를 지급하여야 함
 - → 선급금 = 지급받은 선급금 X 하도급율

업무 TIP

- 1.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 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
- 2.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 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 3.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4. 선급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선급금 발생 유무
 -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가 발주처가 있는 거래인지 확인
 -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선급금 지금의 적정성
 -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
 -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확인
 -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 확인
 - 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 가) 의의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나) 기준
 - A. 건설위탁: 인수일
 - B. 용역위탁 : 용역의 수행이 끝난 날
 - C. 기타 : 납품 등이 잦은 경우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다) 방법
 -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 B. 어음할인률 지급 의무 : 어음만기일이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
- C.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을 대금지급 사유 발생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 60일 (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 (연 15.5%)

업무 TIP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대금 지급기일은 준수하고 있는지
- 대금 지급기일 미준수 시 어음할인료나 지연 이자는 적법하게 지급하는지
 - 다.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법 제17조)
 - 가) 의의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 는 안됨 따라서 반드시 대물변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나) 방법 : 계약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 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업무 TIP

- 1. 대물 변제시 소유권, 담보제공 등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함
- 2.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할 자료
 -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 공부 (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공부의 등본
 - * 건물,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특허권 등의 경우 특허등록원부 등
 -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기재한 공정 증서
- 3.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 제시의 방법 · 절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자기 디스크 등에 전자적 파일형태로 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전송
- 4.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 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함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함
 - 대물변제 자료를 제공한 날, 제공한 자료의 주요 목차,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원·수급사업자의 상호명 등
- 6.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대물 변제의 계약서 기재 여부 확인 사항 하도급대금 지급시 대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계약서 기재시 법적 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대물 변제시 적법성 여부
 - 계약서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지 않는지 확인 계약내용과 달리 대물에 대한 평가액이나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지는 않는지 확인
 - 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가)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
 - A. 일반적인 경우

건설 위탁을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아래의 보증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보증해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함

- \rightarrow 단, 어음인 경우에는 어음만기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을 보증기간으로 함
-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대상이 아님

업무 TIP

보증금액 계산방법

-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 인 경우
 - → 보증금액 = (하도급대금계약금액-선급금) / 공사기간 (개월 수) X 4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 보증금액 = (하도급대금계약금액-선급금) / 공사기간 (개월 수) X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 (개월수) X 2



- B.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 계속 건설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 위탁하는 경우
- 방법 : 원사업자는 최초 장기 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C. 보증의 방법

- 원칙 : 현금의 지급 또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 발행 기관 : 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과 같은 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함
 -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로 할 수 있음
- 발급비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원도급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계약 변경의 경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함
- D.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
- 의의 : 원사업자는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 하지 않은 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업무 TIP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원사업자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고시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 → 공정위는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거나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에서 의한 기업어음 평가등급 A+2 이상을 받은 경우를 지급보증면제대상으로 고시
-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 4.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면제 사유 소멸 : 보증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이 불명확하거나 기성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해야 함
 - 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와의 관계 및 이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 A. 계약이행보증의무와 공사대금보증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B.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을 안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 가능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 → 원사업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보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을 청구할 수 있음

업무 TIP

공사대금보증의무 합의에 의한 면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 1. 하도급공정화지침에 따르면 합의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속 규정임
- 2.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민사적으로 무효로 보기 어려움
- 3. 단,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상호보증면제 합의에 대한 검토

- 1.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 가능
 - C.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대금의 2배 미만)이 부과되며, 이 또한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마.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가) 의의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 → 단,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위탁한 경우라면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해야 함
 - 나) 방법
 - A.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으면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 (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B. 내국신용장 미개설의 정당한 이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업무 TIP

내국신용장 미개설의 정당한 이유

- 1. 하도급공정화지침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2.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면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어야 함
 - → 한편,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명백히 합의하였다면 합의에 의해 정한 날에 개설해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바.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았을 때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나) 원사업자가 15일이내에 관세 등을 환급 받지 못하였더라도 목적물 등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함

업무 TIP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기간을 초과하여 관세환급금 지급가능

- 1.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지 않거나 지연 인도한 경우
- 2.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상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달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 받는 경우
- 4.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을 지체 발급해 준 경우
 - 다)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 또한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기술 탈취 및 기타 금지 및 의무사항

- 가. 부당경영간섭 금지 (법 제18조)
 - 가) 의의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됨
 - 나) 부당경영간섭의 유형
 - A.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

- B.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
- C.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다)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B.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C. 제조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
 - D. 산재 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 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님

업무 TIP

부당 경영간섭행위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하도급 업체와의 인사 교류 기타 존재 여부
- 하도급 업체에게 재무 관리, 기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주요 임직원을 파견 또는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여부
- 하도급 업체 관리
- 상생 목적이 아닌 단가 결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 수지 현황 요구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 하도급 업체가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지 여부
 - 나.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법 제19조, 제20조)
 - 가) 의의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됨

업무 TIP

주요 점검사항 및 행동지침

- 1. 관계 기관 신고나 고발 등을 이유로 거래 단절, 거래 물량 감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지 여부 확인
- 2. 공정위 서면 실태 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여부 확인
- 3.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납품 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지는 않는지 여부 확인



- 다.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 가) 의의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됨

업무 TIP

기술자료의 개념

- 1. 정의 : 기술자료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나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
- 2. 영업비밀과의 차이 :
 - 1) 기술자료의 범위가 영업비밀 보다 넓게 해석됨
 -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 3. 기술자료의 범위
 - 1)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나) 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 A. 원칙 : 원사업자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됨
- B. 요건
 - 제공요구 :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방법을 불문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 자료의 내용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
 - 시기 :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요구하고 이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하도급법 위반 성립



업무 TIP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한 사유

- 1. 제조 등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단,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됨
- 2.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함
 - 1) 요구목적
 -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3)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4) 기술자료의 대가 및 지급방법
 - 5)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 또는 폐기일
 -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C. 정당성 판단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등 강제성이 있거나 수급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 기술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제공 및 활용 범위 등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기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정위 주요 의결 사례

- 1. 로봇제작도면 자료 제공 요구 : 공정위 2016제하2208
- 2. 배터리 제조 관련 기술자료 요구 : 공정위 2013서제3358
- 3. 굴삭기 제작 도면 등 기술자료 요구 : 공정위 2017제하3037

다) 기술 자료의 유용 금지

- A. 원칙 :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B. 기술 유용 :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이나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 →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



C. 위법성 판단

-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고려
 - → 법령, 목적과 의도, 기술 특수성, 관행, 대가 지급 유무, 대가 적정성 등
- 기술 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 했는지 여부
-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났는지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 하였는지 여부

라) 위반 시 제재

- A.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하도급대금 2배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됨
- B. 이 또한 위반할 경우 하도급대금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됨
- C.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실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됨
- D. 기술자료 유용 금지 위반은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3. 하도급위반사건 처리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사건처리절차

절 차	내 용
사건인지	직권인지 또는 신고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고가능)
조사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 조사, 진술요구 등
ᄌᄮᄒ쥐	혐의가 없는 경우 : 심사관 전결로 종결
조사 후 조치	혐의가 있는 경우 :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상정
위원회 상정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통상 2주 내지 3주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위원회의 심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가운데 피심인과 심사관이
위원회 심의 · 의결	상호공방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심의 · 의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결서 작성
브브저扎	처분일(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불복절차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 시정 조치 :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 (작위, 부작위 등)
행정적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제재	·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II^II	· 상습 법 위반자 명단 공표 (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 제한 (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 (3년간 벌점 10점 초과)
	· 과태료 부과 : 2억원 이하
행정	- 허위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질서벌	- 조사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 서면 실태 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사법적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제재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皿-2. 의무 및 금지사항 참조)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위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고발)	- 경영간섭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 탈법행위 위반자
-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 3배 손해배상 책임 (4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발주취소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 반품 금지
 - 기술자료 유용 금지
- · 원칙적 고발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 양벌 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IV. 부록

- 1. 체크리스트
- 2. 대한전선㈜ CP운영규정
- 3.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법령



1. 체크리스트

1) 하도급 거래 단계별 의무사항

구 분	내 용	확인	
, =	게 ㅎ		N
	거래상대방(이하' 수급사업자')은 중소기업자입니까?		
	현재 거래 또는 향후 수행 할 거래는 아래에 해당합니까?		
	(건설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 사 전부 또는 일부		
하도급법에	를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따른 하도급	(제조하도급)		
거래 해당여부	물품제조·판매·수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을 위한 물품(범용품 제외)		
확인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 행하는 거래 (용역하도급)		
	(중역약도급)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용역업자)가		
	자식 가 8도 8되일의 작용 모든 학부의 제용을 입으로 하는 저 (용학합자)가 되었다. 자신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수리하도급)		
	`` · · -/ 수리업자가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		
	하는 거래		
	하도급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 금 및 대금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 면을 발급합니까?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계약체결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귀사가 부담하 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게 전가하는 것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합니까?		
	위탁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합니까?		
	(예시: ① 다수의 수급사업자 또는 품목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②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④ 발주량 등 거래조 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⑥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 로 귀사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합니까?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합 니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까?	
	위탁(발주)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계약해지, 발주취소 등)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 등)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위탁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합니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 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 구매대금 이나 장비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한 사실 이 있습니까?	
	수급사업자에게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수행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였습니까?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증액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합니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거나, 아래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 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금지급 단계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 위탁의 경우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 지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때 수급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까?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귀사의 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등)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계약종료 단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합니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였을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 당시에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이후에 감액하여 지급합니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또는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우회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합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술자료 제공은 7년)의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분쟁조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단계별 확인사항

구 분	III Q		인
T E	내 용		
	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거래개시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 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제의)하고 있습니까?		
거래개시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업, 품질, 기술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당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까?		
단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해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하는 조건으로 인기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함께 구입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 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 사업자는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 서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도매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 매할 수 있는 소매업자를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해당 상품을 매입 하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쟁사업자의 핵심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 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 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습니까?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할인율, 수 수료,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하여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내용으로 변 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계열회사가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및 신규진입을 시도하 는 사업자를 퇴출 및 저지시킬 목적으로 제조원가 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거래계속 단계	자신의 상품을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 쳐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경쟁사업자나 신규진입자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 이나 용역 및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우선하여 판매하도록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에 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는 오직 자신과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상 대방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의 핵심인력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 거나 이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상대방에게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거래처이전을 방해하 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 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 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습니까?	
거래종료 단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 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 종료를 요청함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2000년도 제0차 CP 준수 관련

제출일: 0000년 00월 00일

부 서:_____

성 명:_____

서 명:_____



2. 대한전선㈜ CP운영 규정 (개정일 : 2021년 9월 1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이하, 'CP규정'이라 한다)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회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통해 회사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회사와 임직원을 법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CP규정은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CP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CP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 3.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을 의미한다.
- 4. '최고의사결정기구'는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한다.
- 5.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6. '자율준수운영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CP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 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 7. '자율준수편람'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CP의 이해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등을 위하여 CP 운영 기준, 절차, 사례 등 CP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한 지침서를 뜻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1절 대표이사의 의무와 권한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이 되는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CP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 거래 담당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의 저해 행위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는 CP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 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② 대표이사는 CP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는 CP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와 권한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 또는 자율준수운영팀의 장은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으며,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2.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반기 1회)
-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 4.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5.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 실시
- 6.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 7.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 8. 임직원 제재 조치를 위한 협의회 소집 및 운영
- 9.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 10.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율준수운영팀)

- ① 자율준수운영팀은 회사의 법무팀으로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주관한다.
- ② '자율준수운영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회사의 지원)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여야 한다.

제3절 임직원의 역할과 의무

제12조(임직원의 의무)

CP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및 회사의 CP규정, 사규, 각종 지침 및 자율준수편람 준수
- 2. 고객이나 협력업체, 거래처 등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 준수운영팀과 협의 또는 제보
- 4.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이수
-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등 준수

제3장 CP의 운영

제1절 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제13조(자율준수 의지의 천명)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 ② 위 1항에 따른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표 및 의지천명 대상에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기타 이 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교육

제14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 사항과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기 1



회 이상 확인하여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에 대한 교육)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분기별 1회), 신규입사자 교육(채용시), 수시 교육(위반행위 발견 또는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 ④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3절 내부감시체계(법 위반 모니터링 제도)

제16조(법 위반 모니터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부서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 조사
 - 2. 위 1항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 3.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

제17조(내부고발시스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운영팀 소속 임직원은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18조(법위반 행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모니터링 등에 의하여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사내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담당 부서 및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①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팀 (부서)에 대해서 사규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임직원 및 팀 (부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그 공로가 인정되면 사규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운영성과 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제20조(운영성과 평가)

- ①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운영성과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 (공 시)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상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3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3. CP 운영 관련 법령

1) 공정거래법

-	구분	법령
1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٨	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기연경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
	기업결합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심사기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경제력 집중억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지침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부당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동	공동행위심사기준
	행위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_	¦공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거래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심사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2) 하도급법

구분	법령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하도급분야)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고시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지침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3) 약관법

구분	법령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관심사지침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4) 대리점법

구분	법령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5) 기타

구분	법령
법률	제조물책임법

본 편람은 대한전선㈜ 법무팀에서 제작하였으며, 본 편람의 내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준수운영팀 (법무팀, 내선 10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